

칠레의 90년대 국제화전략과 자유무역정책

김 원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서언

칠레는 1970년대 중반이후 개방경제체제에 입각한 개발전략을 추구하면서 1980년대 중반이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룬, 중남미지역 국가 중 가장 독특한 경험을 가진 국가이다.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 (Augusto Pinochet, 1973-90)은 경제전문가 집단에 위기관리 경제정책을 일임함으로써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부터 분리시켜 비교적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온 사례에 속한다. 1990년 칠레의 우익 군부가 정치일선에서 퇴진하고,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칠레의 경제정책은 격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고속성장 기도에 있는 경제를 떠맡은 민선정부가 경제정책의 변화를 택하는 것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른 남미국가들이 치렀던 경험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본고가 제기하는 문제는 좌파성향의 칠레 민선정부가 과연 어떻게 우파성향의 기존 개방지향형 경제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본고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칠레가 택한 지역경제통합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기간 중

이웃 어느 나라와의 경제통합도 거부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이후 칠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의 가입이나, 남미남부 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에의 참여,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가입 등을 추진했고, 여러 국가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즉, 칠레의 민선정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중남미국가들이 1990년대 글로벌 경제에의 참여를 위해 개방경제정책을 택한 것과는 접근시각을 달리하여, 이미 피노체트 정권이 추구했던 개방형 경제체제의 존재의미를 찾기 위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칠레의 생존전략으로서 자유무역에 입각한 지역경제통합정책을 추구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먼저 칠레의 민선정부가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국제화전략'의 내용 및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이해집합 및 상충을 살펴본 후, 실제로 칠레의 지역경제통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고찰코자한다. 본고는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이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에서 양자간 자유무역추진을 병행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칠레의 전략과 국내이해관계 및 정책현황을 이해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칠레의 '90년대 국제화전략과 그 배경

가. 칠레의 국제화전략

1990년 3월 출범한 칠레의 문민 1기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 행정부와 1994년 3월 들어선 문민 2기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행정부는 모두 중도좌파연합(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 CPD) 정권으로서, 우파 야권세력과 신중한 협의를

통해 정치·경제 안정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칠레에서 오늘날 국민적 합의를 이룬 3대 국가발전 목표는, 거시경제 균형 유지, 빈민층의 기본생활 보장, 개방경제 가속화 등이다. 이중 마지막 요소는 ‘칠레경제의 국제화(*inter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 chilena*)’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국제화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국제수준의 선진화’가 아니라 ‘고립’으로부터 ‘외국과의 적극적인 통합모색’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칠레 국제화전략의 기본틀은 아일원 행정부하에서 만들어졌다. 알레한드로 폭슬리(Alejandro Foxley) 당시 재무장관이 이끄는 재무부 기술관료들과 싱크탱크인 라틴아메리카경제연구원(Corporación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para Latinoamérica: CIEPLAN)은 거시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남미구석에 위치한 작고, 개방된 나라의 발전방향 모색”이란 차원에서 국제화전략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프레이 행정부는 시정공약과 대통령의 의회교서(1994년 5월), 에두아르도 아나나트(Eduardo Aninat) 재무장관의 정책연설(1994년 8월)을 통해 2000년을 향한 칠레의 국제화전략을 밝혔다. 프레이 행정부의 국제화전략 기본 취지는 2000년까지 칠레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기 위해 칠레경제를 점증적으로 세계시장에 통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거시경제적 안정을 누린 칠레의 국제화전략은 노-사정이 단합하여 “주식회사 칠레(Chile Inc.)”의 실현을 통한 수출형 경제의 장기 활로개척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프레이 행정부가 설정한 국제화전략의 대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유주의원칙에 입각한 상품·서비스시장 및 외국인투자의 개방.
- (2) 무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지역협정 활용 및 개방적 지역주의 추구.
- (3) 시장개방, 양자간협정 및 다자간무역기구 참여에 있어 일관성 유지.
- (4) 경제발전의 주체 및 국제화의 최종적 향유자로서의 민간부문 위상 정립.

이상과 같은 대원칙하에서 수립된 국제화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수출시장 접근의 안정성 확보.
- (2) 수출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및 양적 질적 향상.
- (3) 수출시장 다변화.
- (4) 국제경쟁력 및 노동생산성 증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 (5) 경제블록형성에 대비, 제3국 시장진출 여건 유지.
- (6) 생산구조 및 대외부문 관련제도의 개선.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를 위해 칠레의 1990년대 국제화전략이 치중하는 분야는 자유무역협상이다. 자유무역협상은 세계경제가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으면서 각국이 드러내온 보호주의 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칠레는 무역협상에서 각별한 우대가 아닌 균등경쟁조건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는 먼저 자유무역 협상을 위해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비롯해 중남미 지역협의체인 리오그룹,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 등 다자간 기구에 큰 기대를 걸었다. 칠레는 GATT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에서 수입장벽 및 보조금 철폐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위해 적극 협상했다. 그러나 UR협상이 수년간 정체를 면치 못하는 동안 대안으로 양자간 협상 등 자유무역협상에 나서게 되었고, 1993년 UR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역협정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고 있다.

나. 국제화전략의 배경

이상과 같은 국제화전략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역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종전의 피노체트 정권당시의 정책과 전혀 다

름이 없다. 이같은 정책의 일관성이 우파정권에서 좌파정권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칠레의 1990년대 대외경제관계 현실과 과거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1970-73) 정권시절의 국가 실패에 대한 반성이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제질서의 변화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개방화를 이룩한 칠레가 1990년대 들어 새삼스럽게 국제화를 천명한 이유로서 국제적 환경요소는, 탈냉전의 여파와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기운 때문이었다. 유럽통합의 가속화, 동유럽의 경제체제전환, NAFTA 출범, 미국의 미주자유무역구상이 담긴 이른바 부시이니셔티브(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 선언, 그리고 브라질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MERCOSUR 창설 등은 칠레의 대외경제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동유럽국가들은 천연자원 기반이 칠레와 유사하고 선진국 시장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칠레로서는 이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칠레는 1969년 안데스그룹(Grupo Andino: GA)의 창설회원국이 되었으나 나중에 피노체트 정권의 개방화정책과 폐쇄적 관세동맹을 지향한 GA간의 마찰로 1976년 탈퇴한 이래 최근까지 어느 인접국가와도 지역통합을 추진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는 1980년대의 중남미 재민주화 추세에서 가장 늦게 군사정부가 물러났기 때문에 외교무대에서도 고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칠레가 지역경제통합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칠레에게는 자연적 주교역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경우 대미수출이 총수출의 70-80%를 차지하나, 칠레는 그같은 편중된 교역상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칠레의 수출지역은 미주, 아시아, 유럽 등 3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일찍이 시장개방을 추진해 지역통합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칠레는 중남미 공동시장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1980년

에 창설된 ALADI의 11개 회원국 가운데, GA나 MERCOSUR, NAFTA와 같은 경제블록에 소속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칠레의 교역구조에 변화를 일으켰다. <표 1>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최대수출시장이었던 유럽시장은 1991년-97년 사이 34.2%에서 24.1%로 비중이 낮아지고, 미주시장과 아시아시장의 비중이 각각 36.5%, 35.6%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칠레는 고립보다는 미주와 아시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칠레의 1990년대 국제화가 ‘경제통합(integración económica)’, 또는 ‘국제적 참여(insertión internacional)’로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국가실패에 대한 반성

칠레는 다른 중남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40년대부터 수입대체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던 중 70년에 집권한 아옌데 정부의 급진적인 좌경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옌데 정부가 취했던 고임금, 고금리, 고관세, 수입물량 규제 등의 조치들은 시장왜곡을 심화시켰고, 재정적자, 내외국인 투자의 급감, 생산정체, 고인플레이(1973년 605.1%), 실질임금 하락(1973년 38.6%) 등을 몰고 왔다. 또한 아옌데 정부는 임금수준을 포함한 모든 경제분야를 국가의 관여 하에 두어 주요 국내산업 및 외국기업, 금융기관을 국유화함으로써 기득권 세력과의 정치적 충돌을 야기하였다. 아옌데 정부를 무너뜨린 피노체트 군사정부는 당시의 경제실태를 ‘국가(정부)의 실패’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은 시카고학파 경제전문관료(‘Chicago Boys’)들을 등용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칠레의 개방화 및 자유시장경제개혁은 세계무역의 흐름이 여전히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을 때 시작되었고, 개발도상국 구조조정 지원이나 개혁의 선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을 치렀다. 특히 재벌화하는 기업들의 금융투기로 말미암은 1982-84년의 금융위기는 단기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방향을 불러오기도 했으나 종국적인 복귀는 칠레모델의 성공으로 귀결되었다.

<표 1> 칠레의 수출시장 비중추이 (CIF, 백만달러, %)

	1991		1992		1993		1997		1998 (1~8월)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美 洲										
中南美	2,952.4	32.6	3,414.8	33.7	3,576.2	38.0	4,732.6	36.5	4,667.7	41.7
ALADI	1,303.0	14.4	1,707.7	16.9	1,859.9	19.8	5,565.2	19.8	2,635.1	23.5
MERCO	1,238.6	13.7	1,620.3	16.0	1,786.8	19.0	2,448.0	18.9	2,509.9	22.4
SUR	770.0	8.5	990.5	9.8	1,089.2	11.6	1,353.4	10.4	1,228.7	11.0
멕시코	43.5	0.5	92.4	0.9	130.8	1.4	275.7	2.1	377.1	3.4
北 美	1,649.4	18.2	1,713.1	16.9	1,716.3	18.2	2,167.4	16.7	2,032.6	18.2
美 國	1,596.3	17.6	1,649.4	16.3	1,655.2	17.6	2,075.4	16.0	1,926.6	17.2
캐나다	53.1	0.6	63.7	0.6	61.1	0.6	92.0	0.7	106.0	0.9
유 欧										
EC (EU)	3,092.3	34.2	3,214.5	31.7	2,640.2	28.0	3,301.7	25.5	3,235.2	29.0
기타지역	3,281.3	31.8	2,931.7	29.0	2,443.9	26.0	3,124.9	24.1	3,093.2	27.7
아시아										
日 本	2,639.6	29.2	3,147.1	31.1	2,901.1	30.8	4,611.9	35.6	3,058.8	27.3
韓 國	1,644.0	18.2	1,707.3	16.9	1,502.3	16.0	2,085.0	16.1	1,510.3	13.4
台 灣	263.0	2.9	242.8	2.4	413.4	4.4	792.7	6.1	307.2	2.7
中 國	395.3	4.4	490.9	4.8	407.7	4.3	609.3	4.7	407.9	3.6
계	364.1	4.0	349.1	3.4	298.7	3.2	301.6	2.3	230.6	2.1
	9,048.4	100	10,125.5	100	9,416.2	100	12,947.8	100	11,192.3	100

자료: 칠레중앙은행, 1998.

칠레 모델이 가져온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칠레가 개발도상권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무역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1973년 칠레의 평균관세율은 105%, 최고관세율은 770%에까지 달했으나,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취해진 지속적인 개방조치들로 1988년에는 단일관세율이 15%까지 낮아졌고, 1991년 아일윈 행정부하에서 다시 11%로 인하됐다. 최근에

는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6%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칠레는 수입제한이나 수입금지, 보조금, 수입면허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투명성 있는 무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일방적 관세인하조치들은 칠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칠레의 주산품인 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동은 1973년 총수출의 82.2%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된 양상을 띠었으나, 동의 국제가격하락과 수출상품 다양화 조치에 따라 근년에는 그 비중이 35~40%에 머물고 있다. 대신 과일, 임산, 수산물 등 동을 제외한 1차 산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즙, 토마토 소스, 신문용지, 가구, 냉동생선, 통조림 식품, 포도주, 신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 및 제조품의 수출이 늘어 비동(非銅) 수출품의 비중이 60~6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칠레의 고도성장 배경에는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취해진 각종 규제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자유화 정책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칠레는 1974년内外국인 투자에 구별을 두지 않는 외국인투자법(DL-600)을 제정,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선진기술과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칠레정부는 1983년 신광업법 제정, 1985년 채무주식화 개시, 1990년 신외국환관리법 제정, 1993년 원금상환관련 송금 규제완화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법 일부 개정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여왔다. 칠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주로 중간재 생산용 원료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광업 및 임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편이며, 칠레정부는 이같은 편중현상을 피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995년 30억 4,100만달러에서 1997년에는 50억 4,1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199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도 신흥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28.7% 증가한 26억달러에 달했다. 또한 칠레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정부의 해외투자규정 완화,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하기 위한 칠레기업의 적

극적인 국제화전략에 힘입어 크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주요 투자대상지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폐루 등 인접국들이 대부분이며 업종별로는 금융, 서비스업 등이 대중을 이룬다.

<표 2> 칠레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항 목	단위	95년	96년	97년
해외직접투자	십억달러	0.764	1.069	2.253
외국인직접투자	십억달러	3.041	4.578	5.041

자료: Banco Central de Chile, Boletín Mensual 각월호.

Standard & Poor's DRI, World Markets Report Chile, August 1998.

대칠레 외국인투자는 1990년 이전에는 광업부문에 대한 비중이 외국인 총투자액의 80%에 달했으나 1990년 이후 전력·가스·수자원,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1997년 현재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광업부문이 전체 투자액의 32.2%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력가스수자원(27.3%), 제조업(23.7%)이 뒤를 이었다. 국별로는 미국이 30억 6,000만달러로 총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60%를 차지했으며, 스페인(21.0%), 캐나다(19.6%), 이탈리아(7.9%), 영국(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3> 업종별·국별 대칠레 직접투자 현황 (단위 : 십억달러)

순위	업 종	금 액	국 가	금액
1	광업	1.626	미 국	3.06
2	전력·가스·수자원	1.378	스 페 인	1.06
3	서비스업	1.199	캐 나 다	0.99
4	제조업	0.495	이탈리아	0.40
5	수송부문	0.170	영 국	0.22

자료 : 칠레외국인투자위원회(Comité de Inversiones Extranjeras).

3. 사회세력의 이해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산업 수출형으로부터 2차 산업 수출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칠레로서는 해외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비동(非銅)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꾸준히 해외시장을 개척해야하고, 필요한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1990년이래 집권하고 있는 민선정부들도 국민합의만 보장된다면 기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했고, 이는 곧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간 자유무역 등 다각적인 국제사회에의 적극 편입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칠레의 기업가들과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구성한 것은 칠레가 북미와 남미남부지역, 남미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럽과 남미남부지역을 잇는 ‘비즈니스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칠레가 NAFTA와 APEC에 가입하고, MERCOSUR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도 교역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복수 경제블록과의 동시협상을 의미하였다.

칠레정부와 업계, 노동자연합중앙회(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CUT)로 대표되는 노동계 등 3자는 1990년 칠레의 세계시장 편입 및 개방적 지역주의¹⁾에 대한 기본원칙합의를 이루었다. 이는 1992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민간대외경제관계위원회(Comité Privado para las Relaciones Económicas Internacionales)의 결성으로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민선정부 출범 초기, 즉 정치적 과도기의 3자 합의는 얼마가

1) 중남미의 ‘개방적 지역주의(regionalismo abierto)’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통용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약간의 의미차이가 발견된다. 아태지역의 경우, 개방적 지역주의가 본래 역내외 무차별 원칙을 추구한데 반해, 중남미에서는 과거의 보호주의에 입각한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정책에 입각한 지역주의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 않아 정작 NAFTA 가입이나 MERCOSUR 가입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노동계와 업계-정부간의 이해충돌, 그리고 농업계와 여타부문간의 이해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

1994년 칠레정부와 업계는 NAFTA에 노동 및 사회조항이 포함되는 데 반대함으로써 노·사·정간의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즉, 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에 합의된 환경 및 노동에 관한 NAFTA 부속협정이 노동시장의 법규정을 재정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속협정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부속협정의 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NAFTA에 노동 및 사회조항을 새로이 포함시키거나, 아예 NAFTA 가입보다 미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칠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한 것이다. 반면, 노동계 특히 CUT는 경제통합이 가져올 산업폐쇄 및 산업체 배치가 고용안정을 해치고 실업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NAFTA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었다. 또한 CUT는 앞서 1993년 민간대외경제관계 위원회에 지역통합과 관련한 노동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CUT는 이 제안을 통해 칠레상품의 국제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전략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칠레경제의 국제화 심화만이 경제성장과 균등분배 및 사회적정의의 개선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려면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지역경제 통합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NAFTA 가입을 찬성하되 신자유주의 모델이 초래하는 사회적 배제 경향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NAFTA는 기업가 및 금융가의 이해를 도모할 뿐이며, 노동자의 권익을 부속협정으로 밀어내는 셈이기 때문에 차라리 NAFTA 가입보다는 미국과의 양자간협정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업계가 이같은 노동계의 입장에 난색을 표하자 결국 CUT는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칠레사절단에 대표를 파견치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CUT는 1994년 12월 6일 모

든 무역협정 논의에서 노동계가 소외되었음을 주장하며 NAFTA 및 MERCOSUR 관련문제에 관한 모든 노-사-정 3자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칠레정부가 업계에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노동계를 점차 무시해온 데 대한 정치적 불만의 표시였다. 특히 노동계는 칠레정부가 NAFTA 부속협정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의심했는데 이는 칠레정부가 민주화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노조자유 및 노조활동권 보호), 제98호(단체교섭), 제151호(노동자 안전 및 보건, 노동환경), 제154호(농촌조직)를 비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CUT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멕시코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CTM),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Labor Congress: CLC) 등 NAFTA 회원국 노동단체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1995년 5월 자국정부로 하여금 ILO 협약에 규정된 노동조건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키로 합의하였다. 이같은 요구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칠레정부에게 노동권을 묵살할 우려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CUT는 NAFTA가 단기적으로 실업을 양산해내지는 않을 것이지만 MERCOSUR는 농업분야와 축산업분야에서 실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실업보험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칠레농민원주민운동(Movimiento de Campesinos y Etnias de Chile: MUCECH)으로 대표되는 농민노조도 전통작물을 재배하는 소농들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브라질의 농업부문과 경쟁하는데 문제가 많아 소농의 피폐가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노동계와 정부-업계간의 이해충돌 다음으로 칠레의 국제화전략에 변수로 등장한 것은 농업계와 상공업계간의 이해충돌이었다. 상공인연합회(Confederación de la Producción y el Comercio)로 대표되는 상공업계는 NAFTA가 칠레상품의 대미수출에 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종식시

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금융서비스를 자유화시키게 될 것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영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국농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Agricultura)로 대표되는 농업계는 미국과의 통합이 관세인하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기초곡물인 밀, 옥수수, 쌀 등의 가격을 11~26% 하락시키게 될 것이며, 이윤폭은 23~93% 급락하게 될 것으로 주장했다. MERCOSUR 가입을 둘러싸고도 농업계와 상공업계는 의견을 보였다. 상공인들은 MERCOSUR를 구성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대한 수출시 관세철폐가 가져올 경쟁력 증대를 열렬히 환영했으나, 농업계는 농업생산력이 앞서는 MERCOSUR와의 무역자유화가 20만 명의 칠레 농민들을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 상술하는 바와 같이 칠레와 MERCOSUR간의 무역자유화 일정은 농산물의 경우 보다 장기간에 걸쳐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었다.

한편, 칠레의 환경론자들은 칠레의 수출모델이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칠레의 환경법규가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환경기본법(Ley de Bases del Medio Ambiente)이 애매 모호하고 불충분한 상태에서 칠레의 국제화전략은 기업인들의 환경폐해를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의욕만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해왔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칠레가 먼저 MERCOSUR에 가입하고 MERCOSUR가 전체로서 NAFTA에 가입하여 환경 및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정부로의 이행과정에서 칠레의 각 부문별 사회세력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유지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통합의 속도나 협정체결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각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긴장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정부의 국제화전략 수행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4. 칠레의 경제통합 정책의 실제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상

양자간협정에 있어서 칠레는 중남미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칠레는 현재까지 멕시코(1991년, 1998년), 베네수엘라(1993년), 콜롬비아(1993년), 에콰도르(1994년), 캐나다(1996년), 페루(1998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아르헨티나(1991년), 볼리비아(1993년) 등과 특정산업의 공업화계획을 관세인하에 연계시키는 경제보완협정(Aco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ACE)을 체결했다.²⁾ 양자간협정에서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의 장애요인인 운수규제, 동식물검역, 식품규제, 공업규격 개선 및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절차, 원산지규정, 반덤핑, 불공정거래 등을 규율하는 원칙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1) 칠레-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

칠레와 멕시코는 1991년 9월 22일 양국간 경제보완협정(ACE 17호)을 체결, 양국간 부분보완협정(제37호)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1992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시켰다. 주내용은 양국간 시장확대, 상품 및 서비스부문 협력, 투자촉진, 경제정책협조, 항공 및 해상수송 자유화, 이중과세폐지 등이었다.

특히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양측은 1998년 1월 1일까지 완전 관세철폐를 계획하였고, 관세율은 4~6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다. 품목분류상 제1품목은 자동차,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이었으며, 제2품목은 양국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로서, 칠레산 제품은 목재 및 관련

2) 협정의 범위와는 무관하게 칠레가 ALADI 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기술적으로 모두 ACE로서 등록된다.

제품, 닦고기, 계란, 동물성 기름 등이며, 멕시코산 제품은 석유화학제품, 유리, 섬유, 도기 등이었다. 멕시코는 칠레산 포도에 대해 매년 4월 15일 ~5월 31일 사이에 사전 수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사과는 사전 수입 허가 대상품목이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인하 조치는 없었다. 또한 제외품목은 멕시코산 보리(1), 밀가루(1), 식물성유지(25), 설탕(4), 담배(1), 궐련(1), 석유제품(13) 등 모두 46개 품목과 칠레산 수산물(6), 유제품(10), 곡물(8), 설탕(8), 담배(7), 궐련(3), 석유제품(15), 과일(1), 중고의류(1) 등 59개 품목이었다. 이와 별도로 멕시코산 자동차(버스, 트럭 포함)에 대해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협정당시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무관세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 4> 멕시코-칠레간 관세 철폐 일정

	제1품목	제2품목	칠레산 식용 포도
1992. 1. 1. ~	10.0%	10.0%	15.0%
1993. 1. 1. ~	7.5%	10.0%	12.0%
1994. 1. 1. ~	5.0%	8.0%	10.0%
1995. 1. 1. ~	2.5%	6.0%	6.0%
1996. 1. 1. ~	0%	4.0%	4.0%
1997. 1. 1. ~	0%	2.0%	2.0%
1998. 1. 1. ~	0%	0%	0%

또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양국 수출품은 ALADI 규정에 준하여 50%의 국산 원자재로 제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정기적인 규정개정을 통해 ALADI 규정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수출경쟁력이 높은 상품에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양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에는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직수출로 간주하며 이 경우 관세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양국은 보호주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투명성, 한시성, 무차별성이라

는 3원칙을 채택했으며, 국제수지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유사 제품 및 직접적인 경쟁 하에 놓인 제품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확인한 후 1년에 한하여 무차별적인 관세인상(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대상품목을 선별할 수는 없도록 했으며, 기간연장은 피해조사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쟁해결은 ① 양국 주무관청에 의한 직접협상(15일 이내), ② 협정관리위원회에 의한 심의(30일 이내), ③ 양국대표 각 2명, ALADI가 지명한 1명으로 구성된 심의단에 의한 중재(30일 이내) 등 3가지 방식을 열어놓았으며 ③의 중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75일 이내에 중재결과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기간 연장은 105일 이내로 허용토록 하였다.

그밖에 양국은 과세 등의 유사한 부담을 상대국에 적용할 경우 국산품과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양국은 해운수송에 있어 자국선적에 의한 화물수송을 폐지하였다. 또한 양국간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양국 국내법률 내에서 상대국 투자자본에 대해 특별우대조치를 제공키로 하였다.

1992년 2월에는 양국이 원산지인정, 세이프가드, 분쟁처리 등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무역관계는 거의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그후 양국간 교역 관계는 심화일로에 접어들어 1993년 10월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의 칠레 방문시에는 관광, 통신, 삼립자원개발, 기업간 교류, 기술협력 등이 경제보완협정에 추가되었으며, 양국은 1998년 4월 17일에는 ① 향후 5년간 농목축산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철폐 ② 원산지규정의 투명성 제고 ③ 세이프가드 조항에 관한 규정 및 절차 명확화 ④ 자본이동 자유화 ⑤ 지재권, 서비스, 분쟁해결 등에 관한 규정 확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 칠레-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칠레의 NAFTA 가입이 미 행정부와 의회간의 대립으로 지연되자 칠레와 캐나다는 1996년 1월 24-26일간 산티아고에서 칠레가 NAFTA에

가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쌍무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1차협상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1차협상 후 20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개최, 마침내 1996년 11월 18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상품교역,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뿐만 아니라 반덤핑 규제, 무역분쟁 해결기구 설립, 환경, 노동 문제에 대한 부속협정도 포함하고 있어 칠레가 현재까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어떠한 협정보다도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세철폐면에서, 양국간 교역품목의 80%는 협정발효일부터 무관세화되고, 과일, 채소, 신발, 밀, 식용유, 설탕, 토마토 등 나머지 품목은 6~18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칠레산 제품의 92.48%, 칠레로 수출되는 캐나다산 제품의 76.14%가 협정발효와 더불어 무관세화되는 효과를 지닌 것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광업 및 임업에 이용되는 기계 및 장비, 통신장비, 비료, 철강 및 석탄, 의약품, 특정 화학 및 유리제품, 목재 및 제지류, 항공기, 철도 및 전철장비, 자동차 및 부품, 의료장비는 발효와 더불어 무관세가 적용되며, 섬유 및 의류는 칠레 5년, 캐나다 6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관세인하 일정 내 급속한 수입증가를 방지할 목적으로 NAFTA에 준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였다. 신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6년내 관세 철폐를 규정하였고,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즉각 무관세화하였으나 칠레는 캐나다산 냉동콩, 과자류, 견, 초코렛 등 대부분의 가공농산물에 대하여 5년내 무관세화하기로 하였다. 칠레 최대의 민감품목인 제분밀(milling wheat)은 17년 내 무관세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캐나다는 원예품에 대해 6년간에 걸쳐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수산물은 발효 즉시 무관세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통관수수료 부과를 폐지하고, NAFTA에 준하는 통관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서 양국은 상호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투자자유화 측면에서, 칠레는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MFN) 적용 등으로 NAFTA에 준하는 투자환경을 캐나

다에 제공하는 한편, 몰수 등의 조치를 신중히 제한하면서 재산을 몰수할 경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가와 투자자들간의 분쟁처리를 위해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양국간 협상의 최대 결림돌이었던 투자자본의 강제예치부과(Encaje) 제도는 예치금 한도를 인상하지 않고, 예치기간도 최장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칠레의 요구대로 존속키로 하였으며, 향후 칠레가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나라와 협정을 통해 유리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캐나다도 자동적으로 동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³⁾ 단, 투자자금 회수는 현행대로 1년간 금지시켰다.

분쟁해결 규정에 있어서 양국은 공동의사결정과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자유무역위원회 및 FTA 사무국) 마련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유무역위원회는 협정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관련된 제도개선에 노력하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책임을 지녔으며, 양국에 각각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를 지원하고, 모든 분쟁해결패널의 등록자 및 국가와 투자자간의 분쟁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협정에 반하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각국은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했을 경우 각국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국이 상호 수락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을 경우 중재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칠레-페루간 자유무역협정

칠레와 페루 양국은 1993년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14차례의 회담을 개최해왔으나 관세인하일정에 대한 양자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끝에 1998년 5월 4~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최종 협상을 마무리짓고, 7월 1일부로 동 협정을 발효시켰다. 협

3) Encaje제도란 핫머니 유입방지제도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해외차입금, 간접투자, 직접투자에 사용되는 해외차입금 포함, 직접투자는 제외)의 30%를 1년간 중앙은행 무이자계정에 예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199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동 제도는 1998년 6월 예치율을 10%로 낮추고, 9월 다시 0%로 낮추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정발효 즉시 폐루의 대칠레 수출의 약 50%(금액기준 7,000~8,000만달러), 칠레의 대폐루 수출의 약 25%(7,000만달러)가 관세인하 대상이 되었으며, 양국간 교역의 약 25%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서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기로 했으며 섬유, 포도주 등 최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장 18년까지 관세인하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나. 지역협정에의 참여

지역협정에 있어서 칠레는 NAFTA, MERCOSUR, APEC 등에 대해 가입 또는 FTA협상을 추진해왔다. 특히 칠레에게 국제화 전략상 가장 커다란 과제로 등장한 것은 NAFTA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MERCOSUR를 택할 것인가였다. 전자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어온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었고, 후자는 경제블록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지리적 자연교역국들과의 통합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나, 프레이 행정부는 양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중전략(*estrategia dual*)을 택했다.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6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의회에 대한 자유무역 신속처리 협상권한(*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법안상정을 미루자 마침내 칠레는 MERCOSUR에의 참여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APEC 참여를 심화시키며, EU와의 무역협정을 확보하기 위해 진력하게 되었다.

(1) NAFTA 가입 추진

세계경제 변화와 관련해 칠레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는 미국의 대중남미 무역정책이었다. 당시 미대통령은 1990년 6월 27일 EAI를 발표, 중남미 각국의 개방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전미주대륙을 자유무역지대화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첫 단계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을 NAFTA 형태로 추진했다. 이어 당시 미 행정부는 칠레의 정치·경제안정과 개방

화 정도에 비추어 EAI 정책에 따라 칠레를 최우선적인 NAFTA 추가가입 대상국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고, 클린턴 행정부도 이를 재확인했다.

미국으로부터 NAFTA 가입제의를 받은 칠레는 NAFTA 가입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를 검토해야 했다. 회의적인 관점에서는 대미 NAFTA 없이도 칠레의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이 불과 1.8%에 지나지 않으며, 칠레가 이미 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 우수한 등급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진국의 환경폐해 예방기준과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칠레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칠레의 대선진국 수출 주종품이 그렇듯이 대미 수출의 60%가 천연자원이고, 미국의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칠레가 최근의 추세대로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가공천연자원, 그리고 기타 제조 품 등 수출품 다양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고관세의 벽에 부딪힐 것은 분명했다. 또한 미국의 천연 및 가공천연자원 시장에서 칠레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경합도를 감안한다면 칠레는 상대적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균등한 경쟁조건을 얻어내는 협상이 필요했다. 더욱이 대미 FTA나 NAFTA 가입은 현재의 장벽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보호주의 성향을 떨지 모르는 미국 또는 NAFTA 3국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분쟁해결 메카니즘의 균형과 선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커다.

칠레는 미국과의 FTA 추진에 앞서 ALADI 창설규범인 몬테비데오조약상의 제약을 해결해야 했다. NAFTA는 타국과의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면에서 개방된 조약이지만, 몬테비데오조약 제44조는 체약국이 비체약 국에게 부여한 최혜국대우를 나머지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ALADI로부터의 탈퇴를 감수해야 했다.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역시 같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였지만, 멕시코의 경우 대ALADI 수출이 4%선에 지나지 않는 반면, 칠레의 경우에는 1993년 당시 19%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ALADI의 유명무실화 우려 속에 정치적 타결안이 마련됨으로써 해결됐다. 즉, 1994년 6

월 ALADI 체약국 외무장관들은 멕시코 문제와 관련, 콜롬비아의 까르따 헤나에서 회의를 갖고 ‘몬테비데오조약 제44조 해석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체약국은 제44조 의무이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칠레는 가능한 한 NAFTA에 가입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NAFTA 3국과 개별 FTA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멕시코는 1991년 이미 FTA가 체결돼 1992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캐나다 역시 칠레의 외국인투자 개방과 저관세 등을 들어 NAFTA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칠레의 NAFTA 가입 또는 NAFTA 3국과의 개별 FTA 체결은 칠레로서는 시간문제였다. 칠레의 NAFTA 가입문제는 1994년 12월 마이애미 미주정상회의에서 NAFTA 3국에 의해 협상 추진이 선언된 뒤 한때 급진전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해 말 멕시코의 폐소화위기가 시작된 아래 그 여파가 남미지역으로 확산되자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4월 19일 NAFTA 회원국과 칠레간의 비공식 실무회담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회담이 6월 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는 가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강화, 환경보호법규 제정 및 시행강화 등 노동과 환경부문 관련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미 의회가 1995년 10월 행정부에 신속협상처리권 부여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칠레의 NAFTA 가입문제는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1996년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동법안의 재상정을 보류하였으며 1998년 9월 표결에서도 찬성 180표(민주 29, 공화 151), 반대 243표(민주 171, 공화 71, 무소속 1)로 부결된 바 있다.

앞서 1997년 2월 칠레의 프레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NAFTA 가입을 위한 진척을 기대했으나, 미 의회의 소극적 입장만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미의회에서 문제삼는 칠레관련 사항은, ① 군부정권하의 기존 노동법규 개선 불충분 ② 환경정책 이해 불충분뿐이며, 그밖에 미의회는 NAFTA가 ③ 폐소화위기에서 보듯 멕시코의 경제안정을 보장해주지 못

한 점 ④ 미국내 고용기회의 상실 ⑤ 멕시코의 저임금 지속을 초래한 점을 들어 칠레의 NAFTA 가입지지를 꺼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1996년 신속처리협상권한 법안상정을 미룬 이후 칠레는 전술한 바와 같이 NAFTA 가입대신 멕시코와의 기존 협정을 확대하고, 캐나다와도 FTA 체결을 체결하였다.

(2) MERCOSUR의 준회원국 지위확보

1) MERCOSUR 가입에 대한 정책검토

칠레는 1980년 몬테비데오조약에 참여했으나, 1980년대에 중남미 각국이 외채위기에 이어 불황과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자 중남미지역에 무역정책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칠레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던 1970년대, 1980년대와는 달리,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이웃 국가들이 보호주의를 점차 포기하고 개방화에 매진하면서 1991년 MERCOSUR를 창설하고, 이를 확대시키는 추세를 보이자 칠레도 MERCOSUR 활용방안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칠레는 대MERCOSUR 협상 추진을 결정하기에 앞서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첫째, MERCOSUR 회원국들의 환율정책 등 거시경제적 불안은 칠레가 20년에 걸쳐 쌓아놓은 '건실한 경제'의 이미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다. 둘째, 최고 20%에 이르는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율(common external tariff: CET)은 칠레의 단일관세율 11% 보다 높은 편이어서, 1970년대 심대한 구조조정의 대가를 치르면서 개방화를 추진한 칠레로서는 개방화에 역행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다. 셋째, 관세동맹인 MERCOSUR는 무역창출보다 무역전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한 칠레의 국제화전략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칠레의 대MERCOSUR 수출은 MERCOSUR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7억 7천만달러수준에서

1995년에는 17억 7,500만달러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총수출대비 비중도 1991년 8.5%에서 1993년과 1994년 11.6%(1995년 10.8%) 수준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MERCOSUR 수출품목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품이 주류를 이루어 칠레의 총제조품 수출의 42% 가량이 MERCOSUR 회원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칠레에게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MERCOSUR는 칠레에게 ‘제2의 수출도약(segunda fase exportadora)’을 약속하는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졌다. 또한 MERCOSUR는 칠레기업들의 최대 투자대상지역이기도 하다. 더욱이 MERCOSUR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개방화 노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현재의 보호장벽 보다도 칠레에게는 더욱 불리한 교역여건이 전개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MERCOSUR를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칠레는 ‘태평양의 출입구’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MERCOSUR와의 공식적 관계가 필요하였다. 칠레가 MERCOSUR와 통합을 이를 경우 외국인투자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칠레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 및 인프라에서 앞서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같은 큰 시장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상의 이점을 안겨줄 수 있으며, MERCOSUR 국가들의 대서양 항구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무역협상에서 단일국가로서보다 블록의 일원으로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MERCOSUR와의 통합이 주는 이점이었다. 따라서 칠레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회가 왔을 때 이웃시장 진출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칠레의 MERCOSUR 가입과 관련한 법적 제약은 없었다. MERCOSUR 창설규범으로 1991년 체결된 아순시온조약 제20조는 “ALADI 회원국은 다른 경제블록을 형성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경제블록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순시온조약 발효 5년 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MERCOSUR와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가 하

는 점이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칠레에게 가장 큰 부담은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였다. 프레이 행정부는, MERCOSUR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아울원 행정부와는 달리 MERCOSUR와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MERCOSUR내의 대외공동관세 협상이 1994년 8월 부에노스 아이레스 협정에서 최종 합의된 뒤 준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협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개방화에서 앞선 칠레로서는 최종적으로 대외공동관세를 우회하는 방안으로서 MERCOSUR의 관세동맹에는 참여하지 않고 FTA만을 체결한다는 대안을 택하게 되었다.

2)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칠레는 1994년 12월 17일 아순시온 조약의 완결본이라고 불리는 오우루프레투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금융서비스, 교통 및 통신부문의 통합을 주장하는 등 점차 MERCOSUR에의 참여수준을 높여갔다. 칠레는 마침내 1996년 6월 24일 MERCOSUR 준회원가입협정(Acordo de Asociación de Chile al MERCOSUR), 즉 FTA를 맺고, 이를 동년 10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동협정에서 양측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규모의 경제공간에서의 생산요소 활용의 극대화와 같은 일반적인 목적이외에도, 상호간 투자확대와 양대양을 잇는 물리적 인프라의 개발 및 활용극대화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동협정에는 물리적 통합에 관한 별도의 의정서도 포함되어 있다.

양측간 FT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정발효 후에도 칠레와 MERCOSUR 각 회원국간에 체결된 양자간 협정에 기초하여 결정된 특혜관세(PAR)는 계속 인정된다. 칠레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대해 PAR의 세율을 30% 인하한다. 또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40%, 파라과이에 대해서는 50% 인하한다.

② 양측간 교역품목 중 자동차부품, 농업용 자본재를 포함한 공산품 등 일반품목은 40%, 돼지고기, 닭고기, 모피 등 민감품목은 30%씩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2004년과 2006년 완전자유화한다. 석유파생품 및 섬유, 의류 등 특별민감품목과 설탕, 식용유, 쇠고기 등 예외품목, 소맥 등 특별예외품목에 대해

서는 초년도에 관세인하를 적용하지 않으나, 각각 4년차, 11년차, 8년차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2006년, 2011년, 2014년에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③ 칠레 또는 MERCOSUR 회원국이 장차 역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특혜관세는 회원국 모두의 교섭사항으로 한다.

④ 협정발효 후 3년간은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의한 강제력을 갖는 판정을 실시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⑤ 원산지 규정의 대상품목은 섬유제품, 신발류, 일부 자본재 등 총 350개 품목으로 한다.

그밖에 칠레-MERCOSUR간 FTA협정은 칠레와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등 개별국가간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칠레의 수출품목 중 97%가 30% 이상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양측간의 FTA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ALADI의 틀 속에서 기존에 특혜관세(PAR)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관심사는 MERCOSUR와 FTA를 체결한 칠레가 과연 MERCOSUR 가입까지 추진해갈 것인가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역내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칠레의 MERCOSUR 가입을 적극 권장해왔다. 그러나 칠레의 MERCOSUR 가입 가능성은 현 단계로서는 회박하다. 칠레는 단일 수입관세율을 11%로 정하고 있어, MERCOSUR의 CET 최고 20%, 평균 14% 보다 낮다. 칠레가 만일 관세동맹인 MERCOSUR에 가입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해야만 한다면 이에 따른 무역전환 비용은 무역창출의 이득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MERCOSUR에 가입하게 되면, 칠레는 NAFTA에 가입할 경우 NAFTA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특혜관세를 MERCOSUR 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데 칠레의 업계와 농업부문은 이를 꺼리고 있고, MERCOSUR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적 안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점도 칠레가 선뜻 MERCOSUR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5> 칠레-MERCOSUR간 FTA 관세인하스케줄

(단위: 현행관세율의 감면률, %)

	95년 10/1 ~	97년 1/1 ~	98년 1/1 ~	99년 1/1 ~	2000년 1/1 ~	2001년 1/1 ~	2002년 1/1 ~	2003년 1/1 ~	2004년 1/1 ~	2005년 1/1 ~	2006년 1/1 ~	2007년 1/1 ~	2008년 1/1 ~	2009년 1/1 ~	2010년 1/1 ~	2011년 1/1 ~	2012년 1/1 ~	2013년 1/1 ~
일반품목	40	48	55	63	70	78	85	93	100									
ANEXO1	40	48	55	63	70	78	85	93	100									
	50	56	63	69	75	81	88	94	100									
	60	65	70	75	80	85	90	95	100									
	70	74	78	81	85	89	93	96	100									
	80	83	85	88	90	93	95	98	100									
	90	91	93	94	95	96	98	99	100									
ANEXO2	100																	
ANEXO3	30	30	30	40	50	60	70	80	90	100								
ANEXO4	0	0	0	0	14	28	43	57	72	86	100							
ANEXO5																		10년
ANEXO6																		
ANEXO7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33	50	67	83
ANEXO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33	50	67
ANEXO9 (^⑨)																		15년
ANEXO10																		
ANEXO11																		18년 (2014년 칠레)
ANEXO12																		

주: ANEXO 1 다국간회원 역사적 재산(2011)품목.

ANEXO 2 칠레의 양허품목은 290품목, MERCOSUR의 양허품목은 311품목.

ANEXO 3 칠레의 양허품목은 193품목, MERCOSUR의 양허품목은 208품목.

ANEXO 4 파라과이의 양허품목('자동차부품 라스트') 124 품목.

ANEXO 5 특별민감품목 PII품목 및 PII 품목.

ANEXO 6 예외 품목, 칠레의 양허품목은 151품목, MERCOSUR의 양허품목은 139품목.

ANEXO 7 칠레의 양허품목은 29품목, MERCOSUR의 양허품목은 24품목.

ANEXO 8 설탕 등 4품목(칠레, MERCOSUR 함께 공동)

ANEXO 9 소맥 등 3품목(칠레, MERCOSUR 함께 공동)

ANEXO 10 베와 또는 민감품목 및 PAR 제외품목.

ANEXO 11 아르헨티나의 대 칠레 예외품목 88품목.

ANEXO 12 특별예외품목 리스트.

자료: JETRO, "통상통보", 1996. 8. 27., p.8에서 제인용.

<표 6> 칠레의 대MERCOSUR, NAFTA 교역현황

연도	1991				1992				1993				199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상대국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르헨티나	257	33.4	554	41.6	462	46.6	634	36.4	589	54.1	581	33.0	637	47.1	955	46.5
브라질	448	58.2	698	52.4	451	45.5	996	57.2	406	37.3	1,060	60.2	605	44.7	1,000	48.7
파라과이	38	4.9	59	4.4	43	4.3	61	3.5	49	4.5	68	3.9	58	4.3	56	2.7
우루과이	27	3.5	21	1.6	35	3.5	49	2.5	45	4.1	52	3.0	53	3.9	44	2.1
MERCOSUR	770	8.5	1,332	17.3	991	9.8	1,740	17.7	1,089	11.6	1,761	16.2	1,353	11.6	2,055	17.9
미국	1,596	94.3	1,582	84.3	1,649	91.5	1,984	85.4	1,656	89.6	2,477	85.7	2,012	87.7	2,638	83.3
캐나다	53	3.1	157	8.4	63	3.8	162	7.0	61	3.3	203	7.0	70	3.1	265	8.4
멕시코	44	2.6	138	7.4	90	5.0	178	7.7	131	7.1	210	7.3	212	9.2	264	8.3
NAFTA	1,693	18.7	1,877	24.4	1,802	17.8	2,324	23.6	1,848	19.6	2,890	26.6	2,294	19.7	3,167	27.5
전세계	9,056	100	7,707	100	10,126	100	9,849	100	9,416	100	10,869	100	11,645	100	11,501	100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6.

(3) 칠레의 APEC 참여

북미와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성장의 잠재력면에서나 최근 칠레와의 교역 및 투자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칠레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태평양으로의 진출로가 없는 MERCOSUR 국가들에게 칠레는 아시아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적 지위를 모색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칠레 총교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칠레의 수출은 세계 평균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은 1993년 유럽을 앞질러 미주 다음으로 큰 수출지역으로 등장했다. 대일 수출은 대미 수출과 종합 1, 2위를 다투는 규모인데다 일본시장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시장과는 달리 막대한 흑자시장으로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칠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출시장을 수출규모 순으로 선도시장(일본, 미국), 안정시장(한국, 대만), 신시장(중국, 홍콩, 멕시코)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국가들의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이다.

칠레로서는 수출시장을 일본 이외의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하고, 운동구나 전자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등을 포함한 수출품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아시아 수출에서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62.3%에서 점차 줄어 1997년에는 45.2%까지 낮아지고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 또한 대아시아태평양지역 수출품도 광물, 농산물, 임산물 등 1차산품에 편중되어 있던 구조에서 최근에는 어분, 목재, 과즙, 토마토 소스, 통조림 식품 등 가공천연자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1991년부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 참가해 온 칠레는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지원을 토대로 1993년 7월 제26차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각료회의로부터 APEC 가입지지를 얻어내는 등 집요한 로비를 벌여왔다. 칠레는 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차 APEC 회의에서 18번째 회원국으로 공

식 가입했다. 칠레의 경제전략가들은 APEC 가입을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시장진출의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투자와 서비스, 기술이전, 과학기술 등 각 전문분야에서의 정보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칠레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교역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무역사절단 파견, 합작투자유치,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외에 칠레태평양재단(Fundación Chilena del Pacífico)의 창설이 돋보인다. 이 재단은 기업인과 정부, 학자들이 참여하여 태평양진출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유럽과의 FTA 추진

칠레정부는 1990년 12월 지난 1973년 피노체트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17년간 단절되었던 유럽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는데 그후 양측간의 교역은 두드러진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칠레는 급성장하는 EU 시장에 대한 진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찍이 EU와의 FTA를 추진했으나 EU측은 MERCOSUR와 별도의 대칠레 자유무역협상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EU는 1995년 12월 MERCOSUR와 오는 2005년까지 양자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칠레에 대해서도 동일한 협상입장을 보임에 따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상 분위기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마침내 칠레와 EU는 1996년 6월 22일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EU정상회담에 맞추어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로 EU-칠레 기본협력협정(Acordo de Cooperación entre la Unión Europea y Chile)을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 대화 강화: 상호간 고위급 회담 강화, 유럽의회와 칠레의회간 대화 채널의 정례화
- 무역자유화의 토대 마련: WTO의 규정에 입각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 경제적 유대강화 및 신분야 협력 확대: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세, 정보 통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농업·제조업 등 산업간 협력 강화
- 이외에도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구성,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키로 했으며, 1년에 한번씩 브루셀과 칠레에서 번갈아 정례 회담을 갖기로 함.

1998년 5월 15일에는 EU-칠레간 무역소위원회가 개최되어 1996년 6월에 체결된 기본협력협정을 자유무역협정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 단계로 양자간 무역구조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EU는 기본적으로 MERCOSUR 4개국 및 칠레와 동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표 7> 칠레와 EU간의 교역관계

(단위: 백만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출	2,881	2,932	2,444	2,716	4,538.4	3,741.8
수입	1,407	1,847	2,085	2,172	3,239.9	3,608.4
총교역액	4,288	4,779	4,529	5,226	7,778.3	5,350.2

출처: 칠레중앙은행, 1998.

5.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의 국제화전략은 수출시장 확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에서 정부와 업계가 확고한 신념하에 추진되어왔다. 이는 또한 칠레가 군사독재 체제로부터 민선정부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출할 수 있었던 경제·사회적 분배요구의 폭발을 피하기 위한 종전 발전모델의 유지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칠레의 국제화전략은 칠레가 198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이어 1990년대 들어서는 과

거의 고립으로부터 북미-남미, 아시아-남미-유럽을 잇는 새로운 교두보로서 전략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정책수단으로서도 사용되었다. 칠레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와 양자간 FTA를 체결했으며, MERCOSUR와 FTA를 체결하여 남미 10개국 중 볼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역내국가와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역내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중남미국가들이 국제경제에의 참여를 위해 모두가 개방체제를 추구하는 정책적 동질성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칠레는 또한 NAFTA 가입이 미국 내 정치상황으로 정체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멕시코 및 캐나다와 개별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역통합정책 추진의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칠레는 복수 자유무역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상공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회세력들이 특정 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가하는 점이 칠레의 향후 국제화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한편 칠레 정부의 이와 같은 역내국가와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1998년 3월 현재 칠레의 실질 평균관세는 정부의 공식관세인 11%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티아고상공회의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의 실질평균관세는 1996년 3월 10%에서 1997년에는 9.4%, 1998년에는 8.9%로 하락하였다. 또한 칠레 전체 수입업자의 약 27%가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MERCOSUR 등과의 쌍무적인 특혜관세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칠레는 역내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을 이용, 합작투자, 생산거점의 이동 등의 형태로 역내국가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칠레가 아르헨티나의 최대 투자국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며, Cruz Blanca, Sodimac등과 같은 칠레의 연기금사들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 진출, 정보통신 및 건설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칠레의 과일업계는 멕시코 등지의 포도생산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의 첫 상대로 칠레를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상의 고찰이 주는 시사점은 명백하다.

첫째, 칠레의 국제화전략 즉 자유무역협상 전략은 수출시장확보 및 외국인투자유치에 기본 목적이 있다. 아시아시장은 칠레에게 수출대상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칠레가 스스로 MERCOSUR 국가들에게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에서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귀중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이미 안정시장으로 분류된 만큼 우리 나라와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이 성사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상호간 겨냥하는 시장에 대한 진출 잠재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칠레의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꺼린다면 양국간 자유무역이 성사될 리 만무하다.

둘째, 한국상품의 수입이 칠레 국내의 각 사회세력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최근 칠레의 대외경제 상황은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가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을 불러와 동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우 불안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아시아통화의 평가절하 이후 아시아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다른 중남미지역과 마찬가지로 칠레로도 아시아상품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칠레의 산업가들은 아시아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1998년 9월 30일에는 세이프가드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렇듯 칠레의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칠레와의 FTA가 가져올 우리의 수출확대 잠재력이 칠레정부의 국내 정치적 협상입지를 좁힐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칠레정부로서는 국제화전략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공인들에게 두고 있는 만큼, 상공인들이 아시아상품에 의해 위협받는 분위기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호, 「미주의 경제통합: 소지역주의와 범지역주의의 갈등구조」, 『비교 경제연구』 제4호, 1996.
- _____, 칠레경제의 국제적 부상—국제화전략의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No. 94-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김원호, 김수용 외,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1997.
- Chile Economic Newsletter.*
- Financial Times.*
- Wall Street Journal.*
- Washington Post.*
- Banco Central de Chile., *Boletín Mensual*, núm. 846, 1998.
- _____, *Economic and Financial Report*, October 1998.
- Butelmann, A. and P. Meller(eds.) *Estrategia comercial chilena para la década del 90, Elementos para el debate*, CIEPLAN, Santiago, 1992.
- Ministerio Secretaría General de Gobierno de Chile., *Mensaje presidencial*, 1994 (Mayo).
- _____, *Un gobierno para los nuevos tiempos: Bases programáticas del segundo gobierno de la Concertación*, 1994.
-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y Cooperación de Chile., *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 chilena: desafíos pendientes*, 1993.
- Fernández Jilberto, Alex E., "Open Regionalism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Chile",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 Economy 26: 4, 1996-97 (Winter).
- Flaño, Nicolás., "On solid ground: Chile's economy today", Apuntes CIEPLAN, núm. 110, 1992 (Junio).
- Goñi, José., "Chile y Unión Europea, una relación en pleno desarrollo", *Diplomacia*, 69, 1996 (Marzo-Junio).
- Irigoin Barrenne, Jeannette., "Chile y el MERCOSUR en América Latina," *Diplomacia*, 72, 1997 (Marzo-Junio).
- Lagos Erazo, Jaime., "El ingreso de Chile a APEC", *Diplomacia*, 73, 1997(Sept-Dic).
- Nofal, María Beatriz., "MERCOSUR and Free Trade in the Americas" in Sidney Weintraub(ed.) *Integrating the Americas: Shaping Future Trade Policy*, North-South Center, Miami, 1994.
- Saavedra-Rivano, Neantro., "Chil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Shoji Nishijima and Peter H. Smith(eds.) *Cooperation or Rivalry?: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ericas and the Pacific Rim*, Westview, Boulder, 1996.
- Schiff, Maurice and Claudio Sapelli(eds.) *Chile en el NAFTA: Acuerdos de libre comercio versus liberalización unilateral*, CINDE, Santiago, 1996.
- Sáez, Raúl., "Estrategia comercial chilena: ¿qué hacer en los noventa?", *Estudios CIEPLAN*, 1995 (Marzo).
- Tarud, Jorge., "Chile en el Asia Pacífico", *Diplomacia*, 73, 1997 (Sept-Dic).